

농·어촌지역의료보험 확대 실시

- '88년 1월부터 전국의 134개군
지역주민 의료보험 적용 -

- 의료보험조합회 제공 -

1. 개요

정부는 '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주민 826만명에게 의료보험을 확대실시키로 하고 134개 군별로 확대준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민의료보험확대계획에 의하면 '88년에는 전국민의 약 78.0%가 의료보장 혜택을 받게 되며, '8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의료보험이 확대되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국민이 복지의 균등한 배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경제가 그동안 지속·안정 성장의 기반을 다져왔기에 이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여유를 갖게 된 농·어촌 지역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의료혜택을 골고

루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2. 확대실시 배경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지금까지는 농·어촌 주민들이 병이 났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가계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는 그간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을 빠른 시일내에 차질없이 시행키로 하고 '81년에 홍천, 옥구, 군위군과 '82년에는 보은, 강화군 및 목포시 지역에 시범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해 나왔다.

이러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결과로 정부는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의료보험관리모형 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고 지역의료보험 확대사업의 기반을 구

표 1 '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적용현황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군 (계)	134	18	14	9	15	12	22	23	19	2
인 구(천명)	8,260	1,297	524	507	1,182	735	1,462	1,371	1,018	164
세대(천세대)	1,922	302	122	118	275	171	340	319	237	38

축하여 '88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3.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내용

가. 지역주민들은 모두 가입

134개 군지역 주민들은 모두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며 군내에 설립되는 의료보험조합에 모두 가입하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이나 교육보험은 보험가입이 상품을 주고 파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이나 보험의 선택이 자유롭지만 의료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국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 보장의 일종이므로 법에 의해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생명보험이나 교육보험과는 달리,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비가 많은 적든 액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모아둔 보험료로서 치료를 받게하는 국가의 공공복지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가입제도에서는 지

역주민중 어느세대가 타법령에 의해 직장, 직종,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 대상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나. 의료보험조합은 지역주민 손으로 운영

의료보험조합은 지역주민인 피보험자들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자격관리업무, 정확한 보험료 부과근거 자료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보험료부과, 징수업무, 지역주민들이 병을 치료한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업무, 지역주민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요양취급 기관의 지정, 취소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역의료보험은 군단위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 운영하며 조합은 군에 거주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되므로 자율적이며 자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것은 의료보험사업의 재원인 피보험자들의 보험료를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일체의 의료보험관리가 군단위 지역주민의 참여로서 이루어지는



의료보험은 국가가국민의 의료를 국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장의 일종이므로 법에 의해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한다.

등 주민들 책임하에 조합을 경영해나가고 정부는 후견적, 감독적 지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렇게 군마다 의료보험조합이 설립, 운영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되어 『내고향, 우리마을 조합』이라는 애착심을 갖게 되고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처,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다. 보험료는 주민들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

지역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지역주민들의 형평에 맞게 각 세대의 소득, 재산, 가족수 등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즉, 소득과 재산이 많아 가정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내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공동참여의식을 제고시키게 된다.

또한 보험료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이는 실제로 진료혜택을 받는 주민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농·어민 중 보험료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는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며, 조합직원 봉급 등 조합운영비도 전액 국고에서 부담토록 한다. 따라서 보험료는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진료비로만 쓰여지게 된다.

라. 의료시설 확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도모
의료보험에 필요한 재원인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세대마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의료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때는 누구나 똑같이 진료를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의료보험의 특징을 감안,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료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의 운영개선을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지소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회에 대한 근무자세를 강화함으로써 보건기관이 명실상부한 농·어촌 지역의 진료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4. 맺는 말

지금 우리 농·어촌에는 농·어촌에는 농·어촌지역의료보험확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각 군마다 군수를 조합설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 확대추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87년 6월에 착수하여 '87년 10월에 완료하게 되는 추진사업의 내용을 보면 조합의 설립인가 및 조직구성을 위한 조합설립업무, 적용세대의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로 합리적인 보험료 설계를 하기 위한 적용준비업무, 관계요원교육 및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교육업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합운영을 위한 전산개발업무 등이다.

이같은 확대추진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87년 11월부터는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개시됨으로써 희망찬 농어촌 복지시대를 맞게 된다.